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예천군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2.2.10. ~ 2022.2.1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예천군수 ※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.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144-3 외4필지				
	지번 144-3		관련지번 144-6, 146-3, 109-1, 110-2		
	대지면적	2,308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계획관리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581.50㎡	건폐율	25.20%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1층
	주용도	제1종근린생활시설	구조	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8m	용적률	24.10%	연면적 합계 557.00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설계·계획 분야	· 1층 평면도에서 건강나눔센터 방문 시 항상 목적실로 들어가야 하는데, 주민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 상호간에 담소 등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및 로비 공간 계획을 추가로 계획하기를 권장함. · 인근 복지회관과의 연계가 필요함. 사무공간, 야외무대 등 중복 되는 공간의 필요성 재검토. · 설계지침서 내용상 건축설계비 요율 오류로 재산정. · 부지 내 주차장배면 부분 이용자동선 검토.			
	경관·디자인분야	· 옥상 난간벽의 경우, 상단이 내부로 향하도록 물매를 두어, 난간 벽 상부에 쌓이는 오물이 우수에 외벽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. 외벽 을 오염시켜 향후 미관을 악화시킬 수 있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·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·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·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·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